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승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291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승미, 강석주, 김성준,
김원태, 김인제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칠성, 서상열, 서준오,
송도호, 오금란, 왕정순,
우형찬, 유정희, 이민옥,
이영실, 이용균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채수지,
최기찬, 최재란, 한신,
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,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,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자치경찰사무를 협업하여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7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, 자치경찰사무와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
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별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17조의2(재정지원) ① 시장은 별 표 1의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 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·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 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 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에 따른다.</p>

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17조의2(재정지원)	△	“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”라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비용추계가 어려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『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』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안 제17조의2(재정지원)은 여성·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,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,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사무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될 수 있어, 현재로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
⇒ 다만,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추진 지원비용의 하나의 예시로 경찰청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관련 비용(국비·시비 배정)을 토대로 일부금액에 대해 추정할 경우 총 266,500천원¹⁾(연간 133,250천원, 총 2년 소요)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
추계분석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[재정지원 근거규정의 폭넓은 활용가능성 고려] 재정지원 근거 규정은 규정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으나 사업규정 등과 결합하여 사업추진 근거로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소요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금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< 경찰청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관련 >

구 분	국비	시비
2025년	400,000,000원	해당없음
2026년	533,000,000원	133,250,000원
2027년	533,000,000원	133,250,000원
합 계	1,466,000,000원	266,500,000원

주 : 해당 사업의 기간은 2025~2027년(3년)이나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할 시기는 2026년부터 총 2년이므로 이를 고려